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05.1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20.04.27.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05.01.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454호).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아동에 대한 정의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급식업체에 대해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급식지원 안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급식지원 신청에 따른 해당 가구의 가정환경,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통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5조).

사.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경비 집행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2조 및「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2. 27. ~ 2020. 3. 18.)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제정조례안은 급식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4항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3호[1]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3호에 따르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급식지원, ②식습관 개선, ③영양 교육·관리 서비스임.

-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5항에는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 밖에도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함.
- 이를 종합할 때, 아동급식지원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의 의미를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2020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고 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아동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는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조문을 인용한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식아동의 범위를 포함하려는 것임. 이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제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판정기준은 【표 1】과 같으며, 제8호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식아동을 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한 조문으로 사료됨.

【표 1】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913,740원	32,120원	7,050원	33,310원
2인	1,555,830원	52,330원	13,980원	52,630원
3인	2,012,700원	67,570원	25,530원	68,220원
4인	2,469,570원	82,470원	50,950원	83,290원
5인	2,926,440원	98,250원	82,030원	99,400원
6인	3,383,310원	113,000원	107,570원	113,980원
7인	3,842,650원	128,410원	119,410원	129,920원
8인	4,301,990원	144,300원	141,030원	146,240원
9인	4,761,330원	160,550원	160,940원	162,880원
10인	5,220,673원	174,640원	178,365원	177,420원

- 안 제4조제1항은 급식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급식 지원 유형을 정의하고 있음. 양천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방학 중에는 1,832명, 학기 중에는 1,096명에게 유형별로 구분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표 3】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소 26개소, 일반음식점 151개소, 도시락업체 1개소, 편의점 1,324개소 등 총 1,617개소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표 2】 유형별 급식지원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꿈나무 카드	도시락+ 꿈나무카드	지역아동센터급식	비고
방학중	**1,832**	954	150	728	2019 겨울방학 기준
학기중	**1,096**	320	48	728	2019. 11월말 기준

【표 3】 급식 지원 기관(업체, 가맹점) 현황

(단위 : 개소)

계	꿈나무카드 가맹점					도시락 업체	지역 아동 센터
	소계	음식점, 제과점 등	편의점 (CU, GS25,세븐일레븐, (주)미니스톱,(주)이마트24,한국미니스톱(주))	서울시 유가네닭갈비집	서울시 본도시락		
1,617	1,590	151	1,324	21	94	1	26

※ 도시락업체 : 구로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2019.7.1.~2022.6.30. 협약)

- 안 제4조제2항은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업체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 및 발달단계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양천구의 경우,

아동 급식 지원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 중에 있으며, 1인 1식 기준 6,000원이 지원되고 있음. 소요예산은 2,040,000천원(시 920,000천원, 구 920,000천원, 교육청 200,000천원)으로 조사되었음.

- 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는 급식지원 사전 안내 및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35조제4항 및 매뉴얼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문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조사를 할 때, 급식을 신청한 아동의 경제적 사정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급식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하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급식업체 선정이나 식단 점검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임.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양천구청장이 급식업체에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체급식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본 조문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분야 사업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로 사료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 요청을 보냈으며, 이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50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 서울시의 경우 7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표 4】서울시 자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구	조례명	시행일자	비고
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09.	
2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2019.02.07.	
3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2019.06.28.	
4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2019.09.05.	
5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1.	
6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2019.10.31.	
7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2019.11.14.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8. (생 략)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 11. (생 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 7. (생 략)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 4. (생 략)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7. (생 략)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